

무배당 늘안심운전자보험2009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보험가입 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 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약의 보험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 해야 하며, 해당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위임)해야 합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① 가입나이 : 18세 ~ 80세(보험나이기준). 단,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가입나이는 최초의 경우 18세 ~ 80세, 갱신의 경우 23세 ~ 95세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용이율 : 2.00%(연복리, 확정이율)
- 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담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추가(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운전자용), 깁스치료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10년, 20년	10년, 20년	월납, 연납

담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물)(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보이스피싱손해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5년	5년	

③ 만기환급금

- 1종: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의 10%
- 2종: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의 0%

④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⑤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또는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⑥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담보는 아래 담보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⑦ 응급실내원비(응급) 또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⑧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또는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⑨ 응급실내원비(응급) 또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는 아래 담보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및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⑪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및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

원한도)(운전자용) 담보는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⑫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매 5년 단위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⑬ 면허정지보험금 및 면허취소보험금 담보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만기환급금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1종: 보험가입금액 × 10% 2종: 보험가입금액 × 0%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5만원 ~ 500만원
선택 계약	자동차사고부상추가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5만원 ~ 500만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3~100%)(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장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장애지급률 ^{주1)}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최고 500만원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7만원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일반상해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치아파절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	
	일반상해 화상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택 계약		우 보장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		
	일반상해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연금 지급	교통상해사망연금 (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주2)} X 60회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주2)} X 60회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주2)} X 60회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연금 (체증형, 월지급형)(운전자용) ^{주2)} X 60회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선택 계약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	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p>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p> <p>※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p>	<p>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p>	<p>42일~69일</p> <p>70일~139일</p> <p>140일 이상</p>	<p>1,000만원 한도</p> <p>2,000만원 한도</p> <p>3,000만원 한도</p>	
	<p>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II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p>	<p>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p> <p>※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p>	<p>피해자 사망시</p> <p>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p>	<p>5,000만원 한도</p>	<p>42일~69일</p> <p>70일~139일</p> <p>140일 이상</p>	<p>1,000만원 한도</p> <p>3,000만원 한도</p> <p>5,000만원 한도</p>
	<p>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III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운전자용)</p>	<p>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p> <p>※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p>	<p>피해자 사망시</p> <p>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p>	<p>7,000만원 한도</p>	<p>42일~69일</p> <p>70일~139일</p> <p>140일 이상</p>	<p>1,000만원 한도</p> <p>4,000만원 한도</p> <p>7,000만원 한도</p>
	<p>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IV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운전자용)</p>	<p>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p>	<p>피해자 사망시</p> <p>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p>	<p>1억원 한도</p>	<p>42일~69일</p>	<p>1,000만원 한도</p>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70일~139일	5,000만 원 한도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140일 이상	1억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3천만원한도)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 벌금(대물)(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 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보이스피싱손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보장	실제 금전 손해액의 70% (가입금액 한도)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보장	면허정지기간 ^{주4)}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갱신형)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아래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 보상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20만원)

주1)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은 3~100%임

주2)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운전자용) :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0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 (각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별 예시 참조)

주3)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주4) 면허정지기간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서를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이 상품의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물)(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보이스피싱손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0%입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 40세 기준)

담 보 위 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자가용	1급	0.000331	0.000171
	2급	0.000117	0.000060
	3급	0.000082	0.000042
	4급	0.000112	0.000058
	5급	0.000257	0.000133
	6급	0.000170	0.000088
	7급	0.000354	0.000182
	8급	0.001460	0.000770
	9급	0.003292	0.001699
	10급	0.000186	0.000105
	11급	0.003342	0.001726
	12급	0.019115	0.009869
	13급	0.001226	0.000633
	14급	0.025612	0.013223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방식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시행세칙 I. 장기손해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6.보험가격지수 비교·공시" 준용)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 1500만원 및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1억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1종 만기환급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09.4	109.3

[2종 순수보장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08.7	109.6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월납

- 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 1,500만원
- 선택계약 : 자동차사고부상추가(운전자용) 1,000만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10,000만원,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7만원,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만원, 일반상해골절수술 5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 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 50만원,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운전자용) 2만원, 깁스치료비 50만원,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5만원,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2만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2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500만원,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IV(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10,000만원,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3,000만원, 운전중사고별금(대물)(운전자용) 500만원,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2,000만원

[1종 만기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49,680	71,070	20.3%
3년	1,049,040	375,330	35.8%
5년	1,748,400	690,990	39.5%
7년	2,447,760	1,021,560	41.7%
10년	3,496,800	1,500,000	42.9%

[2종 순수보장형]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55,280	-	0.0%
3년	465,840	-	0.0%
5년	776,400	-	0.0%
7년	1,086,960	3,210	0.3%
10년	1,552,800	-	0.0%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